

등록번호	여성가족과-43431
등록일자	2014.12.8.
결재일자	2014.12.8.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협조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2014년 영유아보육료 예산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4년 영유아보육료 예산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 2014년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23725 [2014.12.1.])

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 만3세 영유아
 - ※ 3세는 누리과정보육료와 분담지원(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지원내용 : 연령별 보육료(정부지원단가 100%) 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별 차등 지원

(단위 :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지원단가	394,000	347,000	286,000	220,000

※ 기본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지원단가 : 0세 361,000원, 1세 174,000원, 2세 115,000원
- 지원방식 : 출석일수 구간별 지원

지원방법 :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어린이집 소재지 기준)

- 연령별 보육료 : (부모) 보육료 아이사랑 카드결제 → (어린이집) 카드결제 대금 금융기관에 청구 → (금융기관) 어린이집에 카드결제 대금 선 지급 후 예약센터에 청구 → (시군구) 정부지원 보육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약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부지원금 카드사에 지급
- 기본 보육료 :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신청 → (시군구) 기본보육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예약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기본보육료 어린이집에 지급

Ⅲ 추진개요

2014년 영유아보육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확정내시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예산현액-지출액)	변경내시액	부족액 (변경내시액-예산현액)
계	9,106,000	8,174,625	7,449,981	724,644	9,595,000	1,420,375
국비(35%)	3,187,100	3,358,250	3,032,422	325,828	3,358,250	
시비(32.5%)	2,959,450	3,118,375	2,743,155	375,220	3,118,375	
구비(32.5%)	2,959,450	1,584,000	1,674,404	23,596	3,118,375	1,420,375
특별교부금		114,000				

- 영유아보육료 변경내시 통보 : 2014.12.1
-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비 기 간주처리(변경내시액 - 확정내시액)
 - 국비 171,150천원, 시비 158,925천원

향후 소요예상액(10~12월분) : 2,144,000천원

※ 소요예상액 : 0~2세보육료·기본보육료 + 3세보육료 + 카드사 대납금 - 예약잔액

- 0~2세 보육료·기본보육료(12월분) : 710,000천원
- 3세 보육료(12월분) : 176,000천원
- 보육료 예약금 부족에 따른 카드사 대납 신청액(10~11월분) : 1,300,000천원
- 예약잔액 : 42,000천원

구비 부족액 : 1,420,375천원

● 구비 부족사유

- 구비 상반기(6개월) 지원분만 편성
- 추경예산 편성시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 사유로 확보하지 못함
- 특별교부금 교부되었으나 구비부족액 1,534,375천원 중 114,000천원만 교부됨
 - ※ 특별교부금(사회복지비 부족분 지원) 교부 이첩통보(기획예산과-15052[2014.11.14.])
 - 영유아보육료지원 교부금액 : 114,000천원
 - 영유아보육료 부족액 1,421,000천원 예비비 사용 통보

구비 부족 예산 확보 : 예비비 사용

● 구비 1,420,375천원

IV 행정사항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 기획예산과

예비비 확보 후 영유아보육료 대납액 및 예탁금 납부

붙임 : 1. 조정(특별)교부금 교부 이첩 통보(사회복지비 부족분 지원) 공문 1부
2. 2014년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 변경내시 통보 공문 1부. 끝.